## 2023 호반혁신기술공모전 공모 요약서 양식









## [공모 요약서 (1/2)]

## ′23년 호반혁신기술공모전

기업명			소재지(본사/공장)			
제안 과제명						
	Step 1	1. 스마트시티 ( )	2. 산업융합 ( )			3. 공통/기타 ( )
공모분야 Step #1~#2 은 단계별 1개만 선택 (기타: 상세분야 기재) ※ 중복 지원 불가	Step 2 기타	• OSC공법 - 모듈러() - 프리캐스트 콘크리트() • 건설 자동화 - 로보틱스() - 3D 스캐닝() • 충간소음저감 소재/기술() • 친환경 건설 자재() • 안전관리 - 추락예방/장비협착() - 충돌/구조물 붕괴 방지() - IOT 기반 안전관리() • 스마트홈, 건설 ICT()	<ul> <li>고객관리(출입, 예약 등) 시</li> <li>공간정보 / 메타버스()</li> <li>IoT/AI 기반 레저·유통 솔루</li> <li>AI 큐레이팅()</li> <li>콜드체인()</li> <li>빅데이터/이커머스()</li> <li>로보틱 처리 자동화(RPA)</li> <li>기타()</li> </ul>	루 <b>션</b> ( )	<ul> <li>친환경</li> <li>설비/*</li> <li>디지털</li> <li>환경/*</li> <li>디지털</li> <li>스마트</li> </ul>	니스/드론/자율주행 등( ) 형/재생에너지 인프라( ) 생산관리 널 트윈( ) 편의 특화기술( ) 널 헬스케어/비대면진료( ) 플팩토리( )
기업 분류	창업기업( )	 ) 예비창업자( ) 연구기관( )	설립연월			
직 원 수			사업자등록번호			
제안기술 단계	공동개발 필요 ( ) / 즉시 적용 ( )			성당	성명	
투자유치금액	(누적) 총 백만원		<b>대표자</b> E-		ail	
신청예산				연락	처	

기술	늘개발(or 적용) 개요
기술개발 배경 (문제점)	
기술개발 목표	
BM/솔루션 소개	
호반그룹 협업내용 /기대효과	
국내/외 목표시장	
소요예산	
소요기간	

- ①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\* 지원제외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\*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-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\* 단,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 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-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\* 단,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 는 신청 가능
- \*\* 단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- ⑤ 선정일(추천일)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- \*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
- ⑧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
-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